KiRi Weekly 2012.9.24
금융보험 해설

손해보험의 이해 10:
배상책임보험의 개념 및 종류

김동겸 선임연구원

■ 배상책임보험(Liability Insurance)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, 보험회사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.[1)]

-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"보험의 목적"[2)]에 입게 되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,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질 경우 입게 되는 간접적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일반손해보험과 차이를 보임.
- 배상책임보험은 산업발전으로 각종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,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활용되며,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배상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.

■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금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종목(long tail business)이라는 점에서 일반손해보험의 리스크와 차이를 보임.

-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발생시점이 아닌 배상책임손해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이 장기간에 걸쳐 귀속되는 특징을 보이므로, 각 상품에 특성에 맞는 적정 준비금 적립이 요구되고 있음.
  - AM Best는 미국의 경우 석면(asbestos)사고 관련 손해액이 750억 달러, 환경관련 손실은 420억 달러로 추정되어 총 1,170억 달러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, 보험회사들은 아직까지 충당금 적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음.[3)]

1) 상법 제719조.
2) 보험의 목적(items subject to loss)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피보험자의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화 등이 이에 해당됨.
3) 한편, Financial Times는 15~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나타나는 석면관련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미국기업과 보험회사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향후 2,000~2,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(Korean Re 2011), 과거 30년 보험업계 주요 이슈).

■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의 객체를 기준으로 대인책임보험(Personal Injury Liability Insurance), 대물책임보험(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), 포괄책임보험(Comprehensive Liability Insurance)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.

- 첫째, 대인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,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대인책임보험, 운송보험 중 승객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.
- 둘째, 대물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, 자동차보험 중 대물책임보험, 운송보험 중 화물배상책임보험, 선박보험 중 충돌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.
- 셋째, 포괄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생명 · 신체상해 ·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가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, 자동차보험, 항공보험, 해상보험, 건설공사보험, 종합배상책임보험,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.

■ 한편,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주체에 따라 개인배상책임보험(Personal Liability Insurance), 기업배상책임보험(Business or 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), 전문직배상책임보험(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)으로 분류가 가능함.

- 첫째, 개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, 개인종합책임보험, 운전자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.
- 둘째, 기업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가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, 영업용자동차책임보험, 제조물책임보험, 기업종합책임보험, 항공책임보험, 오염배상책임보험, 임차인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.
- 셋째,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과실에 따라 고객에게 신체상의 장애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, 의료배상책임보험, 약사배상책임보험, 변호사배상책임보험, 회계사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.

■ 한편, 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에 따라 유한(limited)책임보험과 무한(unlimited)책임보험으로 구분하기도 하며, 계약체결의 강제성 여부를 기준으로 임의(voluntary)책임보험과 강제(compulsory or obligatory)책임보험으로 구분하기도 함.